

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

사 건 2000 드단 000호 이혼

원고 ○ ○

피고 △ △ △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친권행사자지정 청구를 병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추가 변경하고 청구원인을 보정합니다.

- 아 래 -

변 경(추가) 된 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- 2. 사건본인 □□□(주민등록번호)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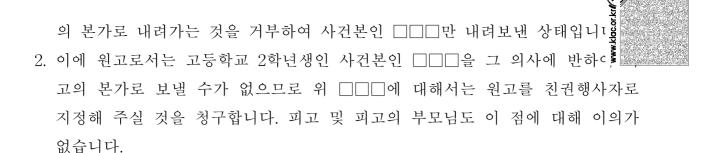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보정된청구원인

1. 원·피고는 그 슬하에 사건본인 □□□(19○○. ○. ○.생), □□□(19○○. ○. ○.생)을 두고 있는바, 원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 사건본인들을 모두 피고의 본가에서 피고가 양육해주기를 원하였고 피고의 부모님 및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최근 위 사건본인들을 모두 피고의 본가로 보내고자 하였으나, 사건본인 □□□□이 갑자기 의사를 변경하여 원고와 살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피고

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서 울 지 부

변호사 김 정 선



2000년 0월 0일

위 원고 〇 〇 〇 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(가사○단독) 귀 중

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서 올 지 부 변호사 김 정 선